**「텍사스주 형법」**

[텍사스주법전 형법, 1973.6.14., 제정, 2017.6.15., 개정]

|  |  |
| --- | --- |
| **원문** | **번역문[[1]](#footnote-1)** |
| **TEXAS STATUTES****PENAL CODE****TITLE 5. OFFENSES AGAINST THE PERSON****Chapter 22. Assaultive Offenses****Sec. 22.011. SEXUAL ASSAULT.** (a) A person commits an offense if:(1) the person intentionally or knowingly:(A) causes the penetration of the anus or sexual organ of another person by any means, without that person's consent;(B) causes the penetration of the mouth of another person by the sexual organ of the actor, without that person's consent; or(C) causes the sexual organ of another person, without that person's consent, to contact or penetrate the mouth, anus, or sexual organ of another person, including the actor; or(2) regardless of whether the person knows the age of the child at the time of the offense, the person intentionally or knowingly:(A) causes the penetration of the anus or sexual organ of a child by any means;(B) causes the penetration of the mouth of a child by the sexual organ of the actor;(C) causes the sexual organ of a child to contact or penetrate the mouth, anus, or sexual organ of another person, including the actor;(D) causes the anus of a child to contact the mouth, anus, or sexual organ of another person, including the actor; or(E) causes the mouth of a child to contact the anus or sexual organ of another person, including the actor.(b) A sexual assault under Subsection (a)(1) is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person if:(1) the actor compels the other person to submit or participate by the use of physical force, violence, or coercion;(2) the actor compels the other person to submit or participate by threatening to use force or violence against the other person or to cause harm to the other person, and the other person believes that the actor has the present ability to execute the threat;(3) the other person has not consented and the actor knows the other person is unconscious or physically unable to resist;(4) the actor knows that as a result of mental disease or defect the other person is at the time of the sexual assault incapable either of appraising the nature of the act or of resisting it;(5) the other person has not consented and the actor knows the other person is unaware that the sexual assault is occurring;(6) the actor has intentionally impaired the other person's power to appraise or control the other person's conduct by administering any substance without the other person's knowledge;(7) the actor compels the other person to submit or participate by threatening to use force or violence against any person, and the other person believes that the actor has the ability to execute the threat;(8) the actor is a public servant who coerces the other person to submit or participate;(9) the actor is a mental health services provider or a health care services provider who causes the other person, who is a patient or former patient of the actor, to submit or participate by exploiting the other person's emotional dependency on the actor;(10) the actor is a clergyman who causes the other person to submit or participate by exploiting the other person's emotional dependency on the clergyman in the clergyman's professional character as spiritual adviser; or(11) the actor is an employee of a facility where the other person is a resident, unless the employee and resident are formally or informally married to each other under Chapter 2, Family Code.(c) In this section:(1) "Child" means a person younger than 17 years of age.(2) "Spouse" means a person who is legally married to another.(3) "Health care services provider" means:(A) a physician licensed under Subtitle B, Title 3, Occupations Code;(B) a chiropractor licensed under Chapter 201, Occupations Code;(C) a physical therapist licensed under Chapter 453, Occupations Code;(D) a physician assistant licensed under Chapter 204, Occupations Code; or(E) a registered nurse, a vocational nurse, or an advanced practice nurse licensed under Chapter 301, Occupations Code.(4) "Mental health services provider" means an individual, licensed or unlicensed, who performs or purports to perform mental health services, including a:(A) licensed social worker as defined by Section 505.002, Occupations Code;(B) chemical dependency counselor as defined by Section 504.001, Occupations Code;(C)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as defined by Section 503.002, Occupations Code;(D) licensed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 as defined by Section 502.002, Occupations Code;(E) member of the clergy;(F) psychologist offering psychological services as defined by Section 501.003, Occupations Code; or(G) special officer for mental health assignment certified under Section 1701.404, Occupations Code.(5) "Employee of a facility" means a person who is an employee of a facility defined by Section 250.001, Health and Safety Code, or any other person who provides services for a facility for compensation, including a contract laborer.(d) It is a defense to prosecution under Subsection (a)(2) that the conduct consisted of medical care for the child and did not include any contact between the anus or sexual organ of the child and the mouth, anus, or sexual organ of the actor or a third party.(e) It is an affirmative defense to prosecution under Subsection (a)(2):(1) that the actor was the spouse of the child at the time of the offense; or(2) that:(A) the actor was not more than three years older than the victim and at the time of the offense:(i) was not required under Chapter 62, Code of Criminal Procedure, to register for life as a sex offender; or(ii) was not a person who under Chapter 62, Code of Criminal Procedure, had a reportable conviction or adjudication for an offense under this section; and(B) the victim:(i) was a child of 14 years of age or older; and(ii) was not a person whom the actor was prohibited from marrying or purporting to marry or with whom the actor was prohibited from living under the appearance of being married under Section 25.01.(f) An offense under this section is a felony of the second degree, except that an offense under this section is a felony of the first degree if the victim was a person whom the actor was prohibited from marrying or purporting to marry or with whom the actor was prohibited from living under the appearance of being married under Section 25.01. | **텍사스 주법****형법****제5편 사람에 대한 범죄****제22장 폭력 범죄****제22.011조(성폭력)**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죄를 범한 것이다. 1. 다음 각목의 행위를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항문 또는 성기에 어떠한 형태로든 삽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나.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입에 가해자의 성기가 삽입되도록 하는 행위다. 타인의 동의 없이 가해자를 포함한 제3자의 입, 항문 또는 성기에 타인의 성기가 닿거나 삽입되도록 하는 행위2. 범행 당시에 아동의 나이를 알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다음 각목의 행위를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가. 아동의 항문 또는 성기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삽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나. 아동의 입에 가해자의 성기가 삽입되도록 하는 행위다. 가해자를 포함한 제3자의 입, 항문 또는 성기에 아동의 성기가 닿거나 삽입되도록 하는 행위라. 가해자를 포함한 제3자의 입, 항문, 또는 성기에 아동의 항문이 닿도록 하는 행위마. 가해자를 포함한 제3자의 항문 또는 성기에 아동의 입이 닿도록 하는 행위② 제1항제1호의 성폭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1. 가해자가 물리적 위력, 폭력 또는 강압을 행사하여 타인의 복종 또는 동참을 강제하는 경우2. 가해자가 타인에게 위력 또는 폭력의 행사 또는 위해의 야기에 대한 위협을 함으로써 타인의 복종 또는 동참을 강제하고, 가해자가 현재 그러한 위협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음을 타인이 믿는 경우3. 타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타인의 의식이 없거나 신체적 저항이 불가능함을 아는 경우4. 정신 질환 또는 결함으로 인하여 성폭력 당시 타인이 그 행위의 성격에 대한 판단을 내리거나 그에 저항할 능력이 없음을 가해자가 아는 경우5. 타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타인이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함을 가해자가 아는 경우6. 가해자가 타인 모르게 물질을 투여함으로써 타인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을 하거나 통제하는 타인의 능력을 가해자가 고의로 손상한 경우7. 가해자가 타인에게 위력 또는 폭력의 행사에 대한 위협을 가함으로써 타인의 복종 또는 동참을 강제하고, 가해자가 그러한 위협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음을 타인이 믿는 경우8. 공무원인 가해자가 타인의 복종 또는 동참을 강제하는 경우9. 정신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인 가해자가 가해자의 현재 또는 과거 환자인 타인이 가해자에게 갖는 정서적 의존성을 악용하여 그 타인이 복종 또는 동참하도록 하는 경우10. 성직자인 가해자가 영적 조언자인 성직자의 직업적 특성상 타인이 그 성직자에게 갖는 정서적 의존성을 악용하여 그 타인이 복종 또는 동참하도록 하는 경우11. 가해자가 타인이 주민으로 거주하는 시설의 직원인 경우. 다만, 그 직원과 주민이 ｢가족법｣ 제2장에 따라 공식･비공식적으로 혼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7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배우자"란 타인과 법에 따라 혼인한 사람을 말한다. 3. "의료 서비스 제공자"란 다음 각 사항 중 하나를 말한다. 가. ｢직업법｣ 제3편 제B부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의사나. ｢직업법｣ 제201장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척추지압사다. ｢직업법｣ 제453장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물리치료사라. ｢직업법｣ 제204장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의료보조자 마. ｢직업법｣ 제301장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국가 공인 간호사, 직업간호사 또는 상급 간호조무사4. "정신 의료 서비스 제공자"란 정신 의료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면허를 취득 또는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경우를 포함한다. 가. ｢직업법｣ 제505.002조에서 정의하는 공인 사회복지사나. ｢직업법｣ 제504.001조에서 정의하는 약물중독 상담사다. ｢직업법｣ 제503.002조에서 정의하는 공인 전문상담사 라. ｢직업법｣ 제502.002조에서 정의하는 공인 결혼-가정 전문 상담사마. 성직자바. ｢직업법｣ 제501.003조에서 정의하는 심리학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학자 사. ｢직업법｣ 제1701.404조에 따라 인증된 정신 건강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경찰5. "시설의 직원"이란 ｢보건안전법｣ 제250.001조에서 정의하는 시설의 직원인 사람, 또는 계약 노동자와 같이 보수를 받고 해당 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아동을 위한 의료 활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동의 항문 또는 성기와 행위나 또는 제3자의 입, 항문 또는 성기 사이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행동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소에 대한 항변 사유이다. ⑤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소에 대한 적극적 항변 사유이다. 1. 가해자가 범행 당시 아동의 배우자인 경우2. 다음 각목의 모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나이가 피해자보다 세 살을 초과하는 연상이 아니며 범행 당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해자1) ｢형사소송법｣ 제62장에 따라 평생 성범죄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2) 이 조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62장에 따른 보고대상인 유죄선고 또는 판결을 받은 사람나. 다음의 모든 사항에 해당하는 피해자1) 나이가 14세 또는 이상인 아동2) 가해자와 혼인하거나 혼인으로 보는 관계를 맺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하고 제25.01조에 따라 가해자와 사실혼 동거가 금지되지 아니한 사람⑥ 이 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는 2급 중범죄이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혼인 또는 혼인으로 보는 관계를 맺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25.01조에 따라 사실혼 동거가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조의 범죄는 1급 중범죄이다. |

1. 조 항 호 목의 기호는 원문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표시한다.

Sec. 1 🡪 제1조

(a) 🡪 ① 또는 제1항

(1) 🡪 1. 또는 제1호

(A) 🡪 가. 또는 가목

i) 🡪 1) 또는 가목의 1 [↑](#footnote-ref-1)